

‘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’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

의 안 변 호	3060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취약 소상공인 “보호”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혁신·성장 소상공인 육성의 마중물이 될 “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”를 조성 중임
- 나. 이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(투자계정) 출자 전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근거
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
- 「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 제4항
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나. 출자개요

○ 추진방향

-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도약이 어려운 소상공인 발굴 투자
-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금융 투자 유도

- 출자재원 :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
- 출자사업
 - 펀드명 :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
 - 결성목표 : 50억원 (시 30억원, 민간 20억원)
 - 운용기간 : 총 8년(투자기간 4년, 회수기간 4년)
 - 투자대상 :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울 소재 기업가형 소상공인

○ '26년 펀드 출자 계획(안) : 7억원

※ 연도별 출자액(안) : 7억원('25년) → 7억원('26년)→ 8억원('27년)→ 8억원('28년)

다. 출자의 필요성

- 경쟁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과밀구조로 인해 반복적인 창업과 폐업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, 기존의 취약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육성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
- 기존의 기술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기업당 높은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나, 소상공인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고 그 투자효과도 단기에 나타나 소규모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큼
- 특히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“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사업”과 연계 추진하여 혁신·성장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중소기업기금(투자계정) 운용계획에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박진(☎2133-5133)